1. 당사자

○ 업체명:고려기계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7월 27일(월)

●환경부공고제2020-62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포괄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실제 수출입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3조제8항, 제9조제7항, 제17조의2제7항)
 - 실제 수출입 기준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
 -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 방법(안 제17조의5, 별표2)
 -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 사진 등 영 상정보, 계량값 등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다. 불법 수출입에 대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 조의6)
 - 수출입안전관리센터를 보증금 예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출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시에는 수출 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보증하도록 계약을 체결토록 함

- 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적정처리이익' 산정방법을 규정(안 제19조의 4)
 - 부적정처리이익은 불법수출시에는 국내 적정처리시 소요비용에서 수입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뺀 값으로 하고, 불법수입시에는 수입자가 받은 처리비용과 국내 적정처리시 소요비용의 합으로 함
- 마. 수출입 허가 · 신고 취소절차를 규정(안 제15조의2, 제17조의7)
 -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려면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토록 하고 허가·신고를 취소한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록 함
- 바. 행정처분 확정시 위반사실 공표절차(안 제19조의3)
 - 위반자 성명 및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환경부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하도록 함
- 사.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및 운영(안 제19조의7)
 - 한국환경공단을 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수출입안전과리센터가 관련기관, 폐기물수출 입자 및 처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페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47,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사항
-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630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0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 5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35)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⁶⁺ ,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9평균	'19.5	'20.4	20.5	′19평균	'19.5	'20.4	20.5	페놀류 페놀류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Ιa	0.3	0.3	0.3	0.3	1.5	1.4	1.3	1.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Ιa	1.1	1.3	1.3	2.2	2.3	2.4	2.2	2.9	<i>"</i>
	공지천2*	의암댐	Ιa	2.5	3.5	1.6	4.5	4.0	4.5	3.1	5.1	<i>"</i>
	삼봉리	청평댐	Ιa	0.9	1.1	1.2	1.1	1.9	1.9	2.0	1.8	"